

대구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2가단1062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1. 19. 접수 제117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신종화

청 구 원 인

1. 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소외 C(이하 'C' 라고만 합니다)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익자입니다.

2.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48657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10,079,888원 및 그 중 금2,922,18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 2012. 9. 25. 확정되었습니다.

3. 손해행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C의 형으로 C의 부친인 망 D이 2017. 10. 27.경 사망함에 따라, C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상속한 공동상속인이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2018. 1. 19. 접수 제117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나. 손해행위 등

(1) 우리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가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C은 원고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이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C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는 C의 형으로서 C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다. 소결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7. 10. 27.경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청구에 이튼 것입니다.

별지목록

1 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동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59.22 m²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구광역시 동구 대 15737 m²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15737 분의 55.07

